

목포시 고시 제2020-178호

목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목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20. 7. 2.

목포시장

1. 목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: 다음
2. 목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: 게재 생략
3. 관계 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(061-270-3446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신항만 지구단위계획

1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5	신항 지구단위계획구역	목포시 목포신항 배후부지 일원	599,480	-	599,480	신항 배후부지

나.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 없음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: 변 경

1)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: 유통·물류/창고/공장용지(용도 C블럭)

■ 기 정

권장용도	지정용도(1)	불허용도(2)	비고
유통·물류/창고/공장용지 (용도 C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독주택 · 공동주택 · 숙박시설 · 근린생활시설 · 의료시설 ·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단 주유소제외) ·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·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·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· 판매 및 영업시설 (단,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 등에서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제외) · 운동 및 집회시설(단,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) 	

■ 변 경

권장용도	지정용도(1)	불허용도(2)	비고
유통·물류/창고/공장용지 (용도 C2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단독주택 · 공동주택 · 숙박시설 (단 생활숙박 및 관광숙박시설은 제외) ·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단 주유소제외) ·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·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·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· 운동 및 집회시설(단,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) 	